제2주제 발표문 『倒産法の近時の検討課題（デジタル化を踏まえて）』에 대한

**토 론 문**

이 재 운(LS전선 주식회사, 변호사)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디지털화를 기초로 한 도산법의 최근 검토 과제에 대하여 준비하고 발표해 주신 아타 히로부미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일본의 전자소송의 변화, 그 중에서도 최근 도산절차에서의 전자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한일민사소송법합동대회라는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불러주신 한일 양국의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소제목 『디지털화에 이르는 경위와 법개정 상황』**을 통해서 현재 일본의 민사소송법 개정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IT인프라가 보편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송절차의 전자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도 일상처럼 익숙해져 최근에는 영상재판도 점차 활성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소송실무는 상당한 수준의 전자화를 구현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의 근간인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종이소송을 전제로 한 체계 그대로여서 현실과 맞지 않는 관계로 앞으로 실무에 맞는 민사소송법 개정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1996년부터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쟁점정리를 위한 전화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2004년 온라인 소장 접수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는 등 이미 2000년 전후로 전자소송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2010년경에나 전자소송과 관련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전자소송 도입에 있어 매우 선구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후 실무적으로 전자소송이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발표내용과 같이 2022년과 2023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소송에 적합한 민사소송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앞으로 속도감 있는 실행이 예상됩니다.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은 향후 한국의 민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법 내용을 보면 2028년까지 단계별로 제도마다 시행 시기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실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발표자께서 직접 실무를 수행하시면서 변호사로써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피부로 느껴지시는 변화의 정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경우 2013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해 오고 있는데, 소장/준비서면/증거자료 제출 및 열람, 각종 서류 송달 등에 있어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영상재판은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영상재판의 실시 여부에 대한 재판부 재량이 크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영상재판은 잘 허락 받지 못한다는 주변 변호사들의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두번째 소제목 『민사재판 절차의 디지털화의 장면』**의 내용을 통해 개정법 내용 중 신청 등의 온라인화, 재판기록의 페이퍼리스화, 기일 등에 대한 웹 회의 방식으로의 참가 등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 **신청 등의 의무화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소송의 효율성만을 생각하면 전면적인 의무화가 효과적이겠지만, ‘현상황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의무화의 경우 국민의 파산 절차 등의 이용 기회를 사실상 빼앗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현상황’이 말씀하신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소외계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종이소송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면적인 의무화는 소외계층의 재판청구권 자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토론자 역시 동감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디바이드의 수치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웹회의 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덧붙여 개정법은 웹회의 방식의 관여를 실제의 물리적 출석과 동가치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은 사실적인 출석이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웹회의 방식의 이용을 인정하려면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당성이 인정되어 웹회의 방식의 이용이 허락되는 경우라면 법원에의 직접 출석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만 웹회의 방식의 출석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리적 출석과 동가치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궁금하고, 어떠한 경우 상당성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변론기일을 웹회의 방식으로 열고자 하는 경우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까지 받아야 해서 일본의 상당성 요건보다 까다롭고, 이렇게 규정한 데에는 변론기일의 공개 재판 원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변론기일 웹회의 방식 개최에 대해 상당성 요건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소제목 『파산절차 등의 디지털화』**를 통해 발표 주제인 도산절차에서의 전자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송달, 제출된 서면 및 기록매체의 디지털화, 디지털화 된 사건기록의 열람, 기일 내의 웹회의 방식 또는 전화회의 방식의 이용 등에 관하여 개정법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으로 앞서 논의된 개정 민사소송법상의 전자소송 내용이 도산절차에서도 대부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절차 위임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및 파산관재인 등에게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송달 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전자소송에 익숙하다는 점, 파산관재인 등이 도산절차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의 폭과 중요성 및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에서의 웹회의 방식 여부 결정에 있어 의견청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파산법에서는 의견 청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번째 소제목 『대처해야 할 과제 – 향후 실무 운용』** 부분에서는 전자소송의 운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파산채권자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전자소송을 활용한 채권신고 이점이 있을지, 채권조사기일을 웹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파산채권자에의 초대장 제공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셨는데, 혹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의 웹회의 방식으로의 실시와 관련하여, 회사법상의 하이브리드 참가형/출석형, 버츄얼 방식 등의 가상주주총회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참가형의 주주총회만 열렸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하이브리드 참가형/출석형 뿐만 아니라 버츄얼 주주총회까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개정 파산법상으로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기술적으로 당사자 신분 확인 방법,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및 그 집계의 공정성과 안정성만 확보될 수 있다면 버츄얼 주주총회까지 개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버츄얼 방식에 의한 채권자집회까지도 개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말미에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하셨는데,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발표문을 준비해 주신 아타 히로부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